

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2011년 2월 22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2일 양준욱 의원외 11인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1년 2월 22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: 양준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내에 설치·운영하여 왔던 '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'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동 시설이 2008년 4월에 폐쇄되어 운영·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청수)

-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'2009년 기준 3,447톤/일 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수집·운반 업체에서 수거하여 서울시내 공공처리시설 4개소(강동·도봉·서대문·동대문 처리용량 788톤/일)에서 처리하고, 나머지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소재한 민간위탁처리 시설(사료·퇴비화)에 위탁처리하고 있음

〈표 1〉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

(2011. 1. 31 현재)

구 분	시설명 (위 치)	처리용량 (톤/일)	운영방법 (운영자)	비 고
사료화	강 동 (고덕동)	240	민자유치 ((주)나엔)	강동구의 5개구 (강남, 광진, 동작, 성동, 중랑)
	도 봉 (도봉동)	150	자치구 직영	도봉구
퇴비화	난 지 (난지물재생센터내)	300	민간위탁 (이에이텍)	서대문, 용산, 마포, 고양시
혐기성 소화	동대문환경자원센 터	98	민자유치 (서희건설)	동대문구
사료화	송파	450	민자유치 (리클린)	송파구(시험가동 중)

-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해당 자치구¹⁾에서 제정·운용하고 있음
- 본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서남 물재생센터 부지에 설치·운영하던 "하수병합-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"²⁾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가동되었으나, 시설의 노후(내구연한 3년초과)에 따른 수선비,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, 시설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져 2008년 4월 가동을 중단하였음

〈표 2〉 서남 하수병합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현황

- 위 치 : 강서구 마곡동(서남물재생센터내)
- 부지 및 건물면적 : 부지 840㎡, 건물 512㎡
- 시설규모 : 하수병합처리시설 20톤/일(강서구 음식물쓰레기 반입)
- 준 공 일 : 2001. 6. 5(연구용 시설로 건설)
- 건 설 비 : 1,124백만원
- 시설운영 : 민간위탁-(주)효성('08.4.25 운영중단)

- 따라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례는 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

- 1) 도봉구, 강동구, 서대문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음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
- 2) 음식물쓰레기를 파쇄-탈수-발효과정을 거쳐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하수처리장 소화조에 투입하여 함께 처리하는 방식

※ 관련법규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폐기물처리시설"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
2. "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

(1)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

(2)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

(3)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(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)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)

□ 폐기물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5.17, 2009.6.9, 2010.1.13>

1.~7.(생략)

8. "폐기물처리시설"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제5조(폐기물처리시설)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3]

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(제5조 관련)

1. 중간처리시설

가. ~ 다.(생략)

라. 생물학적 처리시설

1) 사료화·퇴비화·소멸화 시설(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며, 건조에 의한 사료화·퇴비화 시설을 포함한다)

2) 호기성·혐기성 분해시설

마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11월 2일

발 의 자 : 양준욱 의원외 11명

1. 폐지이유

-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내에 설치·운영하여 왔던 ‘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’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동 시설이 2008년 4월에 폐쇄되어 그 운영·관리를 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